

1998. 4. 20 제정

2026. 3. 18 개정

경영위원회 규정

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경영위원회(이하 경영위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경영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기능)

경영위는 정관, 이사회 규정이 정한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경영위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경영위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위원장은 경영위의 의장이 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(개최)

경영위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경영위의 소집)

- ① 경영위는 의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7일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경영위 위원 및 기타 참석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.
- ② 경영위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경영위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

용해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9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경영위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임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경영위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사항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위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- 2) 주요 경영전략
- 3) 사업계획·사업구조 조정 추진 (한계·적자사업 정비 등)
- 4) 해외 지점·법인 설치, 이전 및 철수
- 5)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
- 6) 국내외 주요 자회사 매입 또는 매각
(자기자본 0.1% 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7) 기타 주요 경영현안
- 8) 지점,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, 폐지
- 9)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- 10) 최근사업년도 생산액의 5%이상 생산중단, 폐업
- 11) 자기자본 0.5%이상 기술도입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, 제휴
- 12) 자기자본 0.5%이상 신물질, 신기술관련 특허권 취득, 양수, 양도계약
- 13)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%이상 상당 제품수거, 파기
- 14)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%이상 상당 단일계약 체결
- 15)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의 5%이상 상당 단일판매 대행 또는 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
- 16) 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
- 17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의 기본원칙의 결정 및 변경
- 18)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, 해임 및 변경
- 19)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
- 20)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
- 21) 삭제

2.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1) 자기자본 0.1% 이상 2.5% 미만 상당 타법인 출자, 처분
- 2) 자기자본 0.1% 이상 2.5% 미만 상당 해외 직접투자

- 3) 자기자본 0.1% 이상 2.5% 미만 상당 신규 담보제공 또는 신규 채무보증 (기간 연장은 제외함)
 - 담보 :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.
 - 채무보증 : 입찰, 계약, 하자,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.
- 4) 자기자본 0.1% 이상 5% 미만 상당 신규 차입계약 체결 (기간연장은 제외함)
- 5) 내부거래의 승인

내부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30억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 미만 상당의 자금(가치급금, 대여금 등), 유가증권(주식, 회사채 등) 또는 자산(부동산, 무체재산권 등)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(기존 계약을 중대한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함)
- 6) 사채발행
- 7) 자기자본 0.1%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. 단,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함.
- 8) 주요 시설투자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

제11조 (통지의무)

- ① 경영위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삭제

제12조 (사후승인)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경영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경영위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경영위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경영위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간사)

- ① 경영위는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위원을 보좌하고 경영위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5조 (경영위 지원)

회사는 경영위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위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담당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16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다.